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생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4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생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에 대학생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생 주거실태조사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4(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u>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 ② <u>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통계조사”는 “주거실태조사”로 본다.</u> ③ <u>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u>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대학생의 학업 환경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등록금 및 월세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금은 대학의 경우 2021년 672.8만원에서 2025년 709.6만원으로, 전문대학은 582.2만원에서 627.1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대학생들이 기숙사 이외에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가격 지수는 2021년 96.1에서 2025년 100.5로 상승하는 추세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등록금(대학)	6,728	6,749	6,782	6,819	7,096
평균 등록금(전문대학)	5,822	5,840	5,959	6,016	6,271

주: 1. 해당 연도에 책정된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

2.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학) 제외

자료: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주요지표

[월세가격 지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종합	94.7	96.9	97.7	99.0	100.4
아파트	92.9	96.2	97.4	98.8	100.4
연립다세대	96.1	97.0	97.3	98.8	100.5
단독주택	99.4	99.9	99.5	99.9	100.1

주: 기준 시점(2025년 3월) 주택월세가격을 100.0으로 한 각 연도 6월의 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대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학생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한 현행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주거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¹⁾ 특성가구²⁾에 대한 조사는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실시되고 있어,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실태

1)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2) 대학생은 특성가구 중 청년가구(가구의 연령이 만19세에서 만34세인 가구)에 포함됨

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로 기숙사 현황을 규정하여, 기숙사 수용 현황, 기숙사 운영 결과,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³⁾ 해당 내용은 기숙사의 일부 정보에 제한되어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생의 주거 관련 현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초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마. <u>기숙사 현황</u>	대학	연 1회	10월

*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 기숙사 수용 현황, 기숙사 운영 결과,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항)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의무
(제2항) 교육통계 조사 준용	· 교육통계조사를 규정한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 - (제3항 준용) 주거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 요청 가능 * 연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 (제4항 준용) 주거실태조사 시,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가능 * 해당 정보를 연계 요청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 (제5항 준용) 주거실태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 가능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 개인, 법인,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 - (제6항 준용)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 평가를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 가능 - (제7항 준용)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 가능 *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제3항) 업무 위탁	·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 위탁 가능 *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제4항) 위임	·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 및 결과 공개 등 대통령령 위임

□ 개정안은 (제1항) 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결과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4항)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와 결과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유는 주거실태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이에 기반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과 공개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조사 주기 등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주거실태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정책수혜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제2항) 교육통계조사를 규정한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주거실태조사에 준용하도록 규정함.

- 구체적으로 제11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간 연계 요청, 개인정보 수집 등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를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목적으로 정보 연계 요청 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주거실태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

해당 조항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연계, 분석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학생의 실제 상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항목을 정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주거실태조사에서 해당 조항을 준용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4)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거실태조사에서 교육통계조사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준용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이 법에 직접 신설하는 방식으로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 아울러 개정안은 제11조의3제7항을 준용하여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3항)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가능 기관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5)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준용된 제11조의3제7항의 국가교육통계센터는 교육통계조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⁶⁾ 등 교육통계조사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에게 필요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해당 조사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정안 제11조의4제3항의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9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9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